

안산시 소하천점용로 및 사용로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45
----------	------

제출년월일 : 2012. 04. 03.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 및 관계법령 「지방세법」 농지세(농업소득세) 규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제정(1996.01.18.) 이후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 수익자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 정비(안 제1조, 제8조)
- 나. 소하천구역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2조제5항)
 -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 →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방세법 제197조 농지세(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항)
- 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산정기준 조정(안 제2조의 별표1)
 -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 →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조정
- 마. 점용료 조정 규정 신설(안 제5조)
-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삭제항목에 따른 조문 재정비

□ 전부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2. 2. 15. ~ 3. 5.(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방침결정문(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계획)
 - 현행 조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건설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김 학 민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천관리계장 김 상 식
	담당자 성명·전화	김희석 (행정 2944)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p>○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p>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p>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p>○ 제1항에 준한다.</p>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3 /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단위수당 적용</p>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3 - 0.5m^3 /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 /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채취	<p>○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p>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m^3$ 미만은 정수하지 아니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p>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농업용 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m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input type="radio"/>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 모래 · 자갈 도매가격 의 평균치의 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input type="radio"/>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 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 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 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포함)	<input type="radio"/>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 한 점용 또는 사용	<input type="radio"/>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input type="radio"/>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	100 %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 %
3.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100 %
4.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된 경우	100 %
5.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요 을 표 (제9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	없 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등과 부당이득금,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p> <p>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생 략)</p> <p>⑤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p>	<p>제1조(목적)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 ----- 토석·모래·자갈 등 ----- -----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 -----.</p> <p>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 -----.</p> <p>②----- 해당연도 ----- ----- -----.</p> <p>③----- 후단에 따라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p>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 해당연 -----
-----.

②토석 · 모래 · 자갈 -----

----- 그 밖의 ----- 인정
되면 제1항에도 -----
-----.

<삭 제>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 · 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 ①-----

--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
②-----
----- 따른
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
---, 법 제18조에 따라 -----

----- 따라 -----
-.

<삭 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① 법 제2

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삭 제〉

〈삭 제〉

〈삭 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2조(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할납입) 부담금액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 등-----
----- 따라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 제14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절용면적에 대하여 <u>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u>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4. 유수의 점용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암원수대 적용
7. 토석·사면의 체취	○ 도지사가 견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면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 비교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u>토지가격의 1/100</u>
4. 유수의 점용	나. 공업용수 <u>국토해양부</u>
7. 토석·모래·자갈의 체취	○ <u>토석·모래·자갈</u>

※ 비교

1. 「부농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45
----------	------

제안년월일 : 2012. 4. 2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1건의 점용료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금액을 수납하기 위한 행정비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1건의 점용료 “500”원 미만인 경우를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2조제1항)

